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
김경훈, 김영옥, 김영철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
남궁역, 민병주, 박 석,
박성연, 박춘선, 봉양순,
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윤종복, 이봉준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장태용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33명)

1. 제안이유

- 2017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의 ‘특정관리대상시설’이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의 ‘3종시설물’로 편입되었고,
- 202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의 ‘1종시설물’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‘2·3종시설물’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음.
- ‘3종시설물’과 ‘법정외 시설물’을 ‘1종·2종이외시설물’로 묶은 부분에서 ‘3종시설물’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함(안 제3조제17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”을 “1종·2종·3종시설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을 “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 략) 17. “1종·2종이외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생 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“3종시설물”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 18.·1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관리자는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과 하천복개구조물, 하천 및 하천시설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,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1종·2종이외시설물에 대하여도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~ ⑤ (생 략)	제6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 ---- 1종·2종·3종시설물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1종·2종·3종이외시설물-- -----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7호 중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정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